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구상엽

전화 052-228-4466

보도자료
2022. 3. 30.(수)

주무 : 형사2부장 원형문

제 목

울산 2세 유아 친모·계부의 아동학대살해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울산지방검찰청 여성·강력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원형문)는 울산 남구 원룸에서 2세 유아(19. 7.생)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유기·방임하여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게 한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 등으로 2022. 3. 29. 각 구속기소하였음
- 한편, 검찰은 사망한 유아의 생후 17개월 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울산남구청, 아동보호전문기관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양육·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

1

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: A(21세), 피해자들의 친모
B(28세), 피해자 C의 계부, 피해자 D의 친부
- 피해자 : C(2세), 피고인 A의 친생자
D(생후 17개월), 피고인들의 친생자

2

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공모하여,
 - 2021. 10.경부터 2022. 3. 3.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만 집에 홀로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유기·방임 **[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**
 - 2021. 10.경부터 2022. 3. 3.경까지 생후 31개월인 피해자 C를 유기하여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게 함 **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]**
 - 2021. 10.경부터 2022. 3. 3.경까지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D를 유기하여 영양실조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으로 학대 **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, 상해]**

3

주요 수사 경과

- '22. 3. 3. 경찰, 피고인 A 긴급체포
- '22. 3. 8. 피고인들 각 구속(피고인 A 사후, 피고인 B 사전)
- '22. 3. 11. 사건송치
- '22. 3. 24.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
- '22. 3. 29. 피고인들 각 구속기소

4

수사결과

-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던 중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계속하여 방치하였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으로 기소

- 검찰은 피해자 D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남구청, 아동보호전문기관, 범죄피해자지원센터, 자문위원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·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

5

향후계획

-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,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☑